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
----------	----

제출연월일 : 2006년 10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학교환경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 발굴 등으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 양성 및 범사회적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안 제2조 ~ 제6조)
 - 구 성 : 30인 이내 (위원장 : 도지사)
 - 대 상 : 도의회의장, 교육감, 도교육위원, 대학 총학장, 민간 사회단체장, 교육행정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기 능 :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등
- 실무위원회 설치 (안 제7조)
 - 구 성 : 10인 이내
 - 대 상 : 협의회 위원으로 소속된 기관·단체 추천으로 위촉
 - 기 능 :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 및 검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학교환경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발굴 등으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범사회적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2.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
3. 우수 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도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장
2. 도교육감
3. 도교육위원회 의장
4. 도내 대학 총장 또는 학장
5. 민간사회단체장
6.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의장은 협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 회의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및 검토 등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 간사는 기획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고문) ①협의회는 유관기관의 장 및 교육계 원로 중 5명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위원장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보상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